

201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세입예산안

- 201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소송비용환수액 및 각종 수당 반납 등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함.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5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0	10,101	10,101	
임시적세외수입	0	10,101	10,101	
기타수입(그외수입)	0	10,101	10,101	

2. 세출예산안

-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 세출예산은 17억 2백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 14억 9백만원 대비 20.7%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5년대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1,409,341	1,701,563	292,222	20.7%	
행정기관리	소 계	1,409,341	1,701,563	292,222	20.7%
	행정운영경비	595,116	592,745	△2,371	△0.3%
	사업비	814,225	1,108,818	294,593	36.1%
교 부 금	-	-	-	-	

○ 2016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5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5 예산		2016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1,409	1,409	1,702	293	21%
사업예산(계)	814	814	1,109	295	36%
감사담당관	285	285	482	197	69%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26	26	26	-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115	115	217	102	89%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21	21	33	12	57%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66	66	145	79	120%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 시상	45	45	45	-	-
온라인 시민 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	12	12	16	4	33%
안전감사담당관	66	66	102	36	55%
명예시민호민관 운영			29	29	신규편성
안전감사 일상감사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 舊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 감사활동 강화 및 윤리경영 지원 - 舊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66 (53) (13)	66 (53) (13)	73	6	9%
조사담당관	265	265	264	△1	0%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23	23	18	△5	△22%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2	62	62	-	-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40	40	39	△1	△3%
기강감찰 운영	52	52	52	-	-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88	88	93	5	6%
민원해소담당관	198	198	261	63	32%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85	85	69	△16	△19%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	26	26	26	-	-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	7	7	10	3	43%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80	80	156	76	95%
행정운영경비(계)	595	595	593	△2	0%
기본경비	595	595	593	△2	0%

Ⅱ .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가. 임시적 세외수입

- 그동안 편성해 오지 않았던 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으로 행정소송 승소비용확정액 수입(그외수입)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세수추계 : 2013년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액 중 체납액과 2012년~2015년 징수액 평균

- 해마다 결산안 심사시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수입’ 및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에 대해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노력이 요망된다는 지적에 대해 금번 세입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징수결정한 세입 중 소송비용의 경우는 거의 매년 당해 연도에 세입처리를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 비용 등의 당해 연도 세입처리를 위한 노력과 함께 최근 과태료 수입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은 소액이라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균형적인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그 외수입(잡수익)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 반납액 등

<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액 >

(단위 : 천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전망
임시적세외수입	0	9,990	0	6,081	0	9,299	0	18,632	0	8,042
과태료	0	0	0	2,000	0	2,000	0	200	0	1,000
그외수입	0	9,990	0	4,081	0	7,299	0	18,432	0	7,042

〈최근 5년간 세입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
2015 (10월 현재)	0	8,042	8,042	0	0	0
2014	0	18,632	7,790	10,842	0	10,842
2013	0	9,298	4,782	4,516	0	4,516
2012	0	6,080	6,080	0	0	0
2011	0	9,990	5,480	4,510	0	4,510

2. 세출예산 검토

가. 감사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2천 6백만원,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2억 1천 7백만원,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3천 3백만원,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억4천5백만원,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4천5백만원, “온라인 시민 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 1천 6백만원 등 총 4억8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5 예산		2016 예산(인)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사업예산(계)	285	285	482	197	69%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26	26	26	-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115	115	217	102	89%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21	21	33	12	57%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66	66	145	79	120%
청렴도 평가 및 청렴사책 평가·사상	45	45	45	-	-
온라인 시민 청원사이트 서울천민인소 유지보수	12	12	16	4	33%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업은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를 통한 감사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예산(1억1천5백만원) 대비 1억3백만원(89%)을 증액하여 2억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특히, 사무관리비 예산(108,000천원)은 전년도(10,800천원)에 비해 900% 증액되었는바, 2015년 7월 1일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출범으로 감사위원(6명)들의 매월 2회 이상 개최되는 회의 참석 수당 및 안전검토 수당(4천만원)의 증가와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감사제도 운영에 따른 외부전문가 참여수당(6천만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

〈예산편성내역〉

과목 구분	2015년 본예산	2016년 예산(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24,774천원 - 인부임 7,920원*14시간*4주*4명*12월 = 21,289천원 - 교통비 60,000원*4명*12월 = 2,880천원 - 보험료 24,168,960원*0.025 = 605천원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25,049천원 - 인부임 8,020원*14시간*4주*4명*12월 = 21,558천원 - 교통비 60,000원*4명*12월 = 2,880천원 - 보험료 611,000원 = 611천원
사무 관리비	○감사관련 자문 및 위원회 운영 10,800천원 - 시민감사위원회 감사관련 심의자문회의 운영 참석수당 150,000원*6명*4회 = 3,600천원 - 성과감사 등 외부전문가 회의 참석수당 150,000원*4명*4회 = 2,400천원 - 시민감사위원회 심의자문 검토수당 100,000원*6명*4회 = 1,600천원 - 성과감사 등 외부전문가회의 안전 검토수당 100,000원*4명*4회 = 800천원	○감사위원회 운영 40,000천원 -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50,000원*6명*25회 = 22,500천원 - 위원회 안전 검토 수당 100,000원*6명*25회 = 15,000천원 - 자료인쇄비 등 100,000원*25회 = 2,500천원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63,000천원 - 외부전문가 참여 수당 250,000원*2명*10일*12회 = 60,000천원 - 자료인쇄비 등 125,000원*2명*12회 = 3,000천원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 워크숍 5,000천원 - 자료 인쇄 및 제본 10,000원*100부 = 1,000천원 - 여행자보험료 100,000원*1식 = 100천원 - 전세버스임차료 1,200,000원*2대 = 2,400천원 - 외부강사료 500,000원*1명*1시간 = 500천원 - 내부강사료 100,000원*5명 = 500천원 - 사무용품비 등 기타 500천원
시책추 진 업무추 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00천원 - 주요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10,000천원 - 감사관련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담회 18,5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00천원 - 주요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10,000천원 - 감사관련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담회 18,500천원
특정업 무 경비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50,400천원 - 2급 100,000원*1명*12개월 = 1,200천원 - 4급 100,000원*1명*12개월 = 1,200천원 - 5급 이하 80,000원*50명*12개월 = 48,000천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5,600천원 - 2급 100,000원*1명*12개월 = 1,200천원 - 4급 100,000원*1명*12개월 = 1,200천원 - 5급 이하 80,000원*45명*12개월 = 43,200천원
민간인 국외 여비		○ 감사위원회 위원 국외연수 여비 10,000천원 - 북유럽 항공료 3,000,000원*2명 = 6,000천원 - 체제비 등 2,000,000원*2명 = 4,000천원

- 다만, 감사위원은 시장이 위촉한 명예직이지만 기존의 자문기관인 일반 위원회의 위원들과 달리 법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자격요건과 영리 목적 겸직제한 등 엄격한 책임성을 요구받고 있고, 위원 개개인이 위원장과 표의 등가성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회의 시 형식적인 심의의결이 아닌 위원 개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의결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일반 위원회와 같은 참석수당(15만원)과 안전 검토수당(10만원)이 적절한 수준인지, 다른 예우나 인센티브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를 위해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조례 제15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및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 사무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다만, 외부전문가를 2명씩 4팀을 구성하여 10일 동안 3회 활동하는 것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명당 1일 25만원, 30일 참여로 총 75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바, 참여 수당으로서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권력적 행위인 감사사무에 대한 민간 위탁 혹은 대행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하는 운영상 세심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참고로 1994년 감사원법 개정 시 감사사무의 민간 대행을 시도했으나, 국가사무 중 감사사무는 민간인이 대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대행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정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사업(예산 3천3백만원) 중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해태, 오류 및 부정과 비리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청렴성 확보를 위해 ‘청백-e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2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청백-e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2014년 시스템 구축비로 6억2천8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그동안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보발령 후 부서별로 점검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자의 관심이 부족하고, 그 운영에 대한 구체적 실적이 저조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는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은 자치구의 반부패 시책 평가를 통하여 기관별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간부공무원의 청렴도 평가를 통한 자기개선 노력과 숭선수범 유도로 조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천5백2십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자치구 청렴시책 평가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자체감사활동 실적, 청렴 인프라 구축, 외부기관 적발 징계실적(감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양적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는데, 최우수 기관(2개) 200만원, 우수 기관(4개소) 200만원, 장려 기관(4개소) 120만원 등 총 520만원의 포상금 규모가 자치구의 자체감사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유인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간부청렴도 평가의 경우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 3천5백만원의 외부 평가 용역을 통해 청렴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조사 후 내부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는바, 외부 공표 등을 통한 내부청렴도 향상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안전감사담당관 소관

- 안전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명예시민호민관 운영”에 2천9백만원,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에 7천3백만원 등 총 1억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안전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5 예산		2016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사업예산(계)	66	66	102	36	55%
명예시민호민관 운영			29	29	신규편성
안전, 일상감사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66	66	73	6	9%
- 舊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 감사활동 강화 및 윤리경영 지원	(53)	(53)			
- 舊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13)	(13)			

- “명예시민호민관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시민명예호민관을 위촉·운영하여 주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 불공정한 사례발생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활동을 위한 것임.
 - 총 8명을 위촉하여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2명씩 총 12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12회 운영으로 서울시의 많은 공사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사업은 전년도에 ‘도시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사업’ 등을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사업예산상으로 볼 때 민선 6기 들어 사전예방적 안전감사 강화를 위해 2015년 신설된 “안전감사담당관”의 조직설치 목적의 의미가 다소 쇠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특히,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를 위한 예산 1천 3백만원은 총 7명이 20만원씩 9회 검토를 위해 편성되었는바, 안전감사에 시민참여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감사의 전문성 보강 및 기술 자문을 위하여 안전감사옴부즈만 20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5년 시행, 김혜련의원 대표발의)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안전사고 예방은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감사옴부즈만 운영에 대해 필요한 실소요 예산 반영을 통한 안전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조사담당관 소관

- 조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1천8백만원,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에 6천 2백만원,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에 3천9백만원, “기강감찰 운영”에 5천2백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에 9천3백만원 등 총 2억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조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5 예산		2016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사업예산(계)	265	265	264	△1	0%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23	23	18	△5	△22%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2	62	62	-	-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40	40	39	△1	△3%
기강감찰 운영	52	52	52	-	-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88	88	93	5	6%

- “부조리 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내부 공무원과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내부고발 및 시민 참여 확산과 클린신고센터에 자진 신고한 직원에게 표창 및 격려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 1천만원, 포상금 8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13년도까지는 7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해마다 집행잔액이 많아 2014년 3천만원, 2015년 2천3백4십만원, 2016년도에는 1천8백4십만원으로 해마다 예산이 급감하고 있는바,
 - 2014년 청렴도 평가 14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조리보다 내·외부의 고발 및 부조리 신고가 줄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내부 고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바, 내부 고발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운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사업도 포상금 5백만원을 신규편성했다고 하나, 포상금 예산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 직원간의 온정주의 등 내부고발 환경을 어렵게 하는 측면은 없는지,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강구가 요망된다고 사료됨.

라. 민원해소담당관 소관

- 민원해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6천9백만원,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2천6백만원,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 1천만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1억5천6백만원 등 총 2억6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민원해소담당관 소관 예산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5 예산		2016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사업예산(계)	198	198	261	63	32%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85	85	69	△16	△19%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	26	26	26	-	-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	7	7	10	3	43%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80	80	156	76	95%

-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사업의 경우 67개 시민생활불편민원에 대해 시·구 합동 점검(반기별 2회) 등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자치구 공무원에 대해 25명, 3일, 2회, 2만원씩 시·구 합동 점검 출장여비로 편성한 3백만원에 대해서는, 자치구 공무원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출장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바, 중복 수령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의 경우 전년(8천만원) 대비 7천6백만원 증액된 1억5천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¹⁾ 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분리하여 2016년도에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출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홍보 예산(2천2십만원), 국외업무여비(3천6백만원) 예산만 신규 편성되고, 워크숍 등 조직 내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바, 시민홍보보다는 조직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감사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 시민감사옴부즈만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로 조례에는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22명만 위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35명 활용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6천6백6십만원)하고 있는바, 구체적 위촉 계획 수립여부의 검토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운영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참 고 자 료

① 감사위원회 현황

□ 감사위원회 구성 : 7명(공무원 1, 변호사 3, 회계사 1, 세무사 1, 교수1)

구 분	인원	근무형태	추천방식	임기	근거
위원장	1	상임	감사관 승계	'15. 7. 1.~'17. 3.15.	조례부칙 제4조
위 원	6	비상임	시장추천 : 4명 의회추천 : 2명	3년 단임 ('15. 7.13.~'18. 7.12.)	조례 제5조

□ 감사위원회 개최 실적

○ 회의주기 : 월2회(2, 4째주 월요일), 수시(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장 소집)

○ 개최실적 : 총 6회

회의차수	개최일자	참석위원	참석수당 등 지급	수당산출내역
소계			9,250천원	
1차	2015.7.13	7명	1,500천원 =6명×250천원	회의참석수당 150천원 안전검토수당100천원
2차	2015.7.23	7명	1,500천원 =6명×250천원	
3차	2015.8.24	7명	1,500천원 =6명×250천원	
4차	2015.9.14	7명	1,500천원 =6명×250천원	
5차	2015.10.12	6명	1,250천원 =5명×250천원	
연찬회	2015.10.23	6명	750천원 =5명×150천원	
6차	2015.10.26	6명	1,250천원 =5명×250천원	

○ 2015년 개최 예정 : 총3회(11월30일, 12월14일, 12월28일)

② 안전감사옴부즈만 명단

전문분야	연번	소속	직위	성명
건설안전 (4)	1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대표	송창영
	2	(주)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표	이채규
	3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기술교육본부장	하재근
	4	신구대학교 토목과	교수	채원규
토목구조 (4)	5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원장	성경익
	6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김상효
	7	(재)한국재난연구원	이사장	윤영조
	8	한국시설안전공단	특수교유지관리센터장	유동우
토질 및 기초 (3)	9	수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박연준
	10	(주)지오닥	대표	장경수
	1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창의전략실장	곽기석
도로 (2)	12	경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낙석
	13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수석연구원	한승환
건축구조 (4)	14	공학박사(건축)		유영호
	15	한국시설안전공단	기획조정실장	박구병
	16	(주)동양구조안전기술	대표	정광량
	17	서일대학교 건축과	교수	김기철
플랜트 설비 (3)	1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이근오
	19	(주)지여이엔씨	대표	홍천화
	20	(주)한성건설턴트	대표	강태은